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도참고자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8년 1월 24일(수요일)	담당부서	통상법무과
담당과장	신정훈 과장(044-203-5770)	담 당 자	박근형 사무관(044-203-5692)

미국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 관련 양자 협의 요청

□ 오늘 **정부는 미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결정**(1.23)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 이번 양자 협의 요청은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게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세계무역기구(WTO)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따른 것이며,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중 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 **WTO 세이프가드 협정 12.3조** :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회원국은 관련 상품의 수출국으로서 실질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회원국에 대하여 특히,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검토하고 동 조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8.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양해에 도달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 정부는 양자 협의를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며,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의 제공도 요청**할 예정이다.

○ 아울러, 미국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따른 **양허 정지도 적극 추진**하는 등 **세계무역기구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통상법무과 박근형 사무관(044-203-56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세이프가드 협정상 보상 및 양허 정지 관련 규정**

□ 조치국의 보상을 위한 노력 의무 (8.1조)

○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국가에게 조치의 영향에 상당하는 수준의 양허를 통해 피해국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토록 규정

* 8.1조 :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을 제안하거나 동 조치를 연장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과 자기 나라 간에 1994년도 GATT에 따라 존재하는 양허와 다른 의무의 수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회원국은 그들의 무역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 보상방법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 피해국의 양허 정지를 취할 권리 (8.2조, 8.3조)

○ 상기 보상에 대한 합의가 안될 경우, 피해국에게 세이프가드 조치에 상응하는 양허 정지를 취할 권리를 부여

* 8.2조 : "제12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서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은 조치가 적용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품무역이사회가 그러한 양허 정지의 서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상품무역이사회가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한 회원국의 무역에 대하여 1994년도 GATT의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나 다른 의무의 적용을 자유로이 정지한다."

○ 다만, 세이프가드 조치가 수입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취해지고 그러한 조치가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진 첫 3년간 양허 정지 제한

* 8.3조 : "세이프가드 조치가 수입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취해지고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경우, 제2항에 언급된 정지의 권리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유효한 처음 3년 동안에는 행사되지 아니한다."